

강사료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① 실험, 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실습강의라 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일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
③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
④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
⑤ 전임 및 초빙교수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⑥ 2인 이상이 담당하는 팀티칭과목의 시간은 책임수업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수를 담당 과목 교원 및 강사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제3조(책임시수)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[별표 1]과 같이 하되,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시는 적은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다음 학기에서 책임시수를 공제하되, 1년 동안 계속 충족하지 못할 시는 특별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

제4조(강사료 계산) ① 시간강사의 강사료 및 전임, 초빙교원의 초과강사료는 [별표 2]에 의거 지급하고, 산업체 겸임교수의 강사료는 [별표 3]에 의거 지급하되, 특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책정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간강의의 지급 범위는 전월 3주차까지의 강의 진행에 의하며, 수업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같이 합산할 수 있다.

③ 우송대학교 소속 전임·초빙교수가 출강하는 경우, 책임시수 계산으로 인하여 우송대학교 수업시수와 합산하여 소속대학에서 강사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책임시수를 적용받지 않는 수업은 출강하는 대학에서 지급한다.

제5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시험시간

2.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로 휴교 하였을 때

제6조(지급일) ① 전임교원의 초과시수에 대한 초과강사료는 급여일과 같다. 단, 수업일수가 3주 이하일 때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될 수 있다.

② 시간강의에 의한 강사료 지급은 매월 3일에 지급하되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될 수 있다.

③ 특별강의에 의한 강사료는 강의실시 후 별도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교원 책임시수

직 책	책임시수(주당)	비 고
총장	0	
부총장	4	
교무위원 (교무, 학생, 입학, 산학, 기획)	6	
계열부장, 학과장, 학보사주간, 연구소장, 유치원장 등 이에 상응하는 보직	10	
산학협력중점교원	8	30%이상 감면
일반 전임 및 초빙교원	12	

[별표 2] 초과강사료 지급기준 (시간당 평균 단가, 단위 : 원)

구 분	주간	야간	비 고
전임교원,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	12,000	13,000	책임시수 초과분
우송대학교 전임교원, 초빙교원	우송대학교 지급기준		우송대학교 책임시수 제외한 초과분
시간강사	특	50,000	
	A	28,000	
	B	25,000	
	C	21,000	

[별표 3] 산업체 겸임교원 강사료 지급기준 (시간당 평균 단가, 단위 : 원)

시수 월수당	1~3시간	4~6시간	7~9시간	10시간 이상	비 고
30만원 까지	55,000	41,000	37,000	35,000	수당포함
30만원 초과	$\frac{(\text{주당 담당시수} \times 15\text{주} \times 28,000) + (\text{월수당} \times \text{수당지급월수})}{(15\text{주} \times \text{주당담당시수})}$				수당포함 (백단위 반올림)

※ 산업체겸임교원의 등급은 일반강사A급에 준하며, 겸임 해임시 일반강사 등급으로 전환 또는 재계산 됨.